

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216호)

2023년 12월 12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23. 11. 10.
- 나. 제출자 : 노미경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 : 2023. 11. 15.
- 라. 위원회 심사 : 2023. 11. 28.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노미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4조, 제5조)
-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장애예술인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병수)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등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장애인의 예술 활동 증가 및 장애예술인 규모 확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
-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제약없는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, 보다 성숙하고 다양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5. 소수의견 : 없음